

고성군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5
------	-----

제출년월일 : 2003. 3. 1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고성군이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을 자매결연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6조)
- 다.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협정 등과 관련한 중요문서는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고,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안 제8조)
- 라.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폐지(안 부칙 제2항)

3. 제정근거(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47호, 2000.3.27.)

4. 조례안 : 붙임과 같음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과의 자매결연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대상) 자매결연 대상은 고성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군수는 국내외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단체 등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2.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기타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5조(사전교류) ①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외 단체 등과 사전에 다각적이고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단체 등간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지역여건 및 실태 등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팸플릿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자매결연 체결등 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외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단체 등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및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당해 단체의 장과 협의 서명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협정 등과 관련한 중요문서는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내외 단체 등과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때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고성군훈령 제213호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